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실제 지급된 액수가 신청액보다  
초과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기 무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1449 판결



## 1. 대법원 판결 -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 2. 대법원 판결 - 인건비 공동관리 구체적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 부정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의 운영에 관하여 연구원들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 총액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회수한 인건비는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가 운영·관리되었고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에서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일부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임에도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인건비 신청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3. 환송심 광주지법 판결 -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사기 무죄

##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의 운영에 관하여 연구원들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 총액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회수한 인건비는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가 운영·관리되었고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에서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일부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임에도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449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